

---

# 재정운용세칙

---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세칙 제 2 호]

- 제정 : 2018. 09. 05
- 개정 : 2019. 02. 01
- 개정 : 2020. 02. 01
- 개정 : 2021. 02. 01

## <목 차>

제 1 장 총 칙 .....	2
제 2 장 재정 운용의 원칙 .....	2, 3
제 3 장 회 계 .....	3, 4
제 1 절 총수입 · 총지출	
제 2 절 예산 · 결산	
제 4 장 기구 별 재정 .....	4, 5, 6
제 1 절 통 칙	
제 2 절 의결기구 재정	
제 3 절 집행기구 재정	
제 4 절 산하기구 재정	
제 5 절 특별기구 재정	
제 5 장 감사위원회 .....	6, 7, 8
제 6 장 총학생회비 조정 .....	9
제 7 장 재정운용규칙 .....	9, 10
부 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 모든 기구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 ·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의 운영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 3 조 **【대표자의 책임】**

-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 의원 등 선출직 학생회장단과 감사위원회는 본회 및 각 기구의 재정 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단, 회계에 대한 실무는 각 기구 집행위원회 사무재정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 의원 등 선출직 학생회장단과 사무재정담당자는 「재정운용세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 의원 등 선출직 학생회장단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④ 본회의 의결기구 · 집행기구 · 산하기구 · 특별기구는 재정 운용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총학생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 5 조 **【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 「총학생회 회칙」 제 133 조의 원칙에 따른다.

## 제 2 장 재정 운용의 원칙

제 6 조 **【재정 운용의 논의】** 매년 신입생 등록기간 전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한 각 기구 선출직 학생회장단은 확대운영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재정운용(예산안 · 결산 작성, 학생회비 징수, 올바른 집행 방법 및 내역 공개 등)에 관련하여 교육 및 논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예산안 · 결산 심의의 원칙】**

-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 ·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총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산하기구 · 특별기구와 총학생회에서 특정한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산안 · 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 ③ 예산안 · 결산의 대상은 총학생회비의 수입 · 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 · 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④ 예산안 · 결산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안 · 결산의 작성은 재정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 ·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 8 조 **예산안 · 결산 삭감의 원칙**

- ① 예산안 · 결산을 「총학생회 회칙」과 「재정운용세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예산안 · 결산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기의 총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10%, 30%, 50%의 비율 중에서 지급액을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② 예산안 · 결산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총학생회비 지급을 삭감할 때, 삭감된 금액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앙운영지원비로 포함한다.

#### 제 9 조 **총학생회비 집행의 원칙**

- ① 총학생회비는 본회의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 ② 총학생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의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재정운용규칙으로 정한다.
- ③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④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 제 10 조 **총학생회비 배분의 원칙**

총학생회비 배분은 재정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구, 재정 운용을 총학생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를 고려하여 각 기구에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총학생회비가 배분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 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총학생회비와 단과대학 학생회비 및 특별기구의 운용은 매년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산 기간 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학부 · 학과 학생회비의 운용은 매년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안을 작성하고, 결산은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산 기간 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12 조 **재정운용회의**

- ① 재정운용 관련 사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와 각 단과대학 집행위원회의 재정 담당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운용회의를 개최한다.
- ② 재정운용회의는 본회의 각 기구의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사안을 다룬다.
- ③ 각 단과대학 집행위원회의 재정 담당자들은 재정운용회의에 참석해야하며, 불참 시 재정운용회의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 3 장 회 계

### 제 1 절 총수입 · 총지출

### 제 13 조 **총수입**

- ① 총수입은 총학생회비 수입,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의 총합을 말한다.
- ② 총학생회비 수입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교비지원금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교비지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 ③ 사업별 후원금은 사업별 광고수익, 기부금 등을 말하며,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4 조 **총지출**

- ①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 제 2 절 예산 · 결산

### 제 15 조 **예산안의 편성**

- ① 예산안은 각 기구의 예산 운용 계획과 예상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 ② 각 기구의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다.

### 제 16 조 **결산의 작성**

- ① 결산은 각 기구의 예산 운용 내역과 그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 ② 각 기구의 결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에 관하여서는 입금된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각 기구의 결산서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다.

## 제 4 장 기구 별 재정

### 제 1 절 통칙

제 17 조 **총학생회비 책정**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 회칙」 제 118 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고지한다.

제 18 조 **분배** 총학생회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집행기구 : 50%
2. 산하기구 : 50%

## 제 2 절 의결기구 재정

### 제 19 조 **의결기구 재정**

- ① 의결기구의 재정은 학생총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 운영에 사용된다.
- ② 의결기구 재정은 중앙운영지원비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있다.

### 제 20 조 **중앙운영지원비**

- ① 중앙운영지원비는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전체 학생회 주요 공동사업 및 행사를 집행하는 중앙 재정이다.
- ② 중앙운영지원비는 총학생회비와 학부 · 학과 학생회비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 ③ 학부 · 학과 학생회비 지원금은 각 학부 · 학과 학생회의 입학 신입생 정원 X 중앙운영지원금으로 계산한다.
- ④ 중앙운영지원금의 규모는 전년도 주요 공동사업 및 행사의 재정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제 21 조 **중앙운영지원비의 용도**

- 1. 단과대학 지원금
- 2. 총학생회 주최 전체 학생회 공동 사업 및 행사
- 3. 학생회장단 총 선거

## 제 3 절 집행기구 재정

### 제 22 조 **집행기구 재정**

-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 ② 총학생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총학생회장단에 있다.

### 제 23 조 **고정자산**

- ① 총학생회 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고정자산의 목록은 총학생회실에 비치된 사무기구, 가구, 행사용품 등 사물자산으로 작성한다.

### 제 24 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 ① 제 18 조에 의거하여 총학생회비 수입의 50%를 집행기구에 배정한다.
- ② 집행기구의 재정은 운영비, 사업비로 나누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 제 25 조 **운영비**

운영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 26 조 **사업비**

사업비는 총학생회에서 주최 및 진행하는 사업,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 4 절 산하기구 재정

#### 제 27 조 **산하기구 재정**

- ① 산하기구 재정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각 학부·학과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 ② 산하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각 산하기구의 학생회장단에 있다.

#### 제 28 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50%를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배정한다.
- ② 각 학부·학과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자체 회비로 운영한다.

#### 제 29 조 **단과대학 학생회 재정**

- ① 단과대학 학생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중앙운영지원비로 구성된다.
- ② 단과대학 학생회의 재정은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 ③ 운영비와 사업비의 용도는 제 25 조와 제 26 조를 준용한다.

#### 제 30 조 **학부·학과 학생회 재정**

- ① 학부·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자체 회비로 구성된다.
- ② 학부·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 ③ 운영비와 사업비의 용도는 제 25 조와 제 26 조를 준용한다.

#### 제 31 조 **동아리연합회 재정**

- ①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자체 회비로 구성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 ③ 운영비와 사업비의 용도는 제 25 조와 제 26 조를 준용한다.

### 제 5 절 특별기구 재정

#### 제 32 조 **특별기구 재정**

- ① 특별기구의 재정은 각 특별기구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 ② 특별기구의 재정 운용의 책임은 각 특별기구의 위원장에게 있다.

#### 제 33 조 **중앙운영지원비 수입의 배정**

특별기구는 각 기구마다 중앙운영지원비의 일부를 배정한다. 각 기구의 중앙운영지원비 배정 비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단, 졸업준비위원회는 자체 재정으로 운영한다.

### 제 5 장 감사위원회

#### 제 34 조 **지위**

감사위원회는 수원대학교 전체 학생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학생회 예산집행을 위해 「총학생회 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장에 의해 발족된 재정감사를 위한 상설특별기구이다.

#### 제 35 조 **구성**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사무재정담당자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재정담당자로 구성한다.

#### 제 36 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사무재정담당자로 한다.

제 37 조 **【감사 내용】**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들을 감사한다.

1. 총학생회 재정운용 및 회계
2. 단과대학 학생회 재정운용 및 회계
3. 학부 및 학과 학생회 재정운용 및 회계
4. 중앙운영지원비 재정운용 및 회계
5. 그 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재정운용 및 회계

제 38 조 **【재정】**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비 및 중앙운영지원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총학생회 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제 39 조 **【감사위원회 정기회의】**

-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정기회의 및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정기회의의 기간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0 조 **【업무 및 권한】**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 방안, 예산안 · 결산, 증빙자료 및 사유서의 서식을 정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비 및 각 학부 · 학과 학생회비 책정안을 감사하여 책정된 학생회비가 적절한지 심의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책정된 총학생회비 및 각 학부 · 학과 학생회비와 예상 납부율을 고려한 예산안이 적절한지 심의한다. 예상 납부율의 경우 총학생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 각 학부 · 학과 학생회비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진행시 각 기구의 결산과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올바른 재정운용이 이루어졌는지 심의한다.

제 41 조 **【학생회비 책정】**

- ① 총학생회비 책정은 「총학생회 회칙」 제 118 조를 준용한다.
- ② 총학생회비 조정의 세부사항은 제 6 장 총학생회비 조정에서 다룬다.

제 42 조 **【예산안】**

- ①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예산안 감사는 각 학기 개강 전에 완료한다.
- ② 학부 · 학과 학생회비의 예산안 감사는 1 학기 개강 전에 완료한다.
- ③ 예산안 제출일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예산안 제출일 기준 최소 2 주 전에 재정책임자 (학생회장단)에게 예산안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안 감사는 마지막 예산안 제출일을 기준으로 1 주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 43 조 **【결산 및 증빙자료】**

- ① 각 기구의 결산 및 증빙자료 감사는 매월 감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산 감사 기간 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결산 및 증빙자료 제출일은 해당 감사시기에 감사위원회가 공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결산 및 증빙자료 제출일 기준 최소 2 주 전에 재정책임자(학생회장단)에게 결산 양식을 제공한다.
- ④ 결산 및 증빙자료 감사는 마지막 결산 제출일을 기준으로 1 주일 이내에 완료한다.

#### 제 44 조 **정계**

- ① 다음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기구는 48 시간 내에 정당한 사유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사유서의 양식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1. 감사위원회에서 공지한 예산안 · 결산 제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증빙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44 조 2 항과 해당하는 부당 결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 44 조 3 항과 4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 ② 감사위원회에서 보충이 필요한 내역이라고 판단되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기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분실한 경우 해당 기구는 감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해당 결산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 당월 결산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불응 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의결을 통해 해당 기구 재정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중앙 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의결을 통해 해당 기구 재정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구 재정책임자는 탄핵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해당 부당 결산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 당월 결산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이나 도장 등을 위조 또는 무단 사용하여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의결을 통해 해당 기구 재정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제 45 조 **공개**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해당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총학생회 SNS 및 각 학과/학부 채팅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 제출 불이행, 학생회비 부당 사용 적발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서도 함께 공지한다.
- ② 감사자료 전체 공개는 각 기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열람 희망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감사 자료를 서면 또는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6 조 **학생회비 인계**

- ① 각 기구의 임기 마무리 시 잔여 학생회비는 차기 학생회장단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인계 시기는 각 기구 차기 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후 1 개월 이내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각 기구 임기 말 최종결산내역을 고려하여 각 기구의 학생회비 인계금액을 작성하여 차기 감사위원회에 인계한다.

## 제 6 장 총학생회비 조정

제 47 조 **인상률** 총학생회비는 3년마다 5%씩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간의 물가인상률과 등록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8 조 **조정절차**

- ① 총학생회비 조정안은 「총학생회 회칙」 제 118 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작성하며 매 2학기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 ② 총학생회비 조정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9 조 **재심의** 정회원 · 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로 총학생회비 조정의 재심의를 요구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비 인상안을 재심의한다.

제 50 조 **금액 조정의 발효** 총학생회비가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은 다음연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제 7 장 재정운용규칙

제 51 조 **재정운용규칙** 재정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제 52 조 **제 9 조 2항에 관한 규칙** 각 기구 집행부의 업무를 위한 지출가능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지출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감사위원회 내부 심의를 통하여 결산을 반려할 수 있고, 반려된 결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기구 재정 책임자가 반환한다.

1. 사업 및 행사 운영에 있어 소속된 기구의 공공의 이익 또는 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봉사한 인원의 경우 그 봉사의 금전적 가치보다 낮은 금액의 기본적인 의 ·식 ·주를 보장하는 비용
2. 사업 및 행사 운영에 있어 필요한 물품을 대여해주는 등 공공의 이익 또는 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보탬이 된 경우 해당 행위의 금전적 가치보다 낮은 금액의 지원금
3. 기존 학부 · 학과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지원금
4. 해당 단대 · 학부 · 학과의 전체 인원에게 예외없이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자체 진행 행사의 지원금
5. 학생, 교수 등을 모두 포함한 각 기구의 소속 인원의 경조사, 은퇴 등 정기적, 계획적이지 않은 돌발성 지출의 경우 단대 · 학부 · 학과의 전체 인원에게 공지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학생 대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비용
6. 행사진행 중 학생, 교수 등을 모두 포함한 각 기구의 소속 인원의 부상 및 사고 등

긴급상황의 경우 해결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해당 지원금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형사사건에 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2018.08.05)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